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 승 일



2026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67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를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로 한다.

제2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의 개정) 광주

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로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광

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로 한다.

제7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상자”를 “요구자”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1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 광주광역시”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

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의 가산점란 기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

별표 22 제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의 가산점란 기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별지 제2호서식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14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6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로 한다.

제17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제1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관련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소 속	
직	
성 명	
당 직 근 무 면 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 직 근 무 면 제 사 유	
기 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의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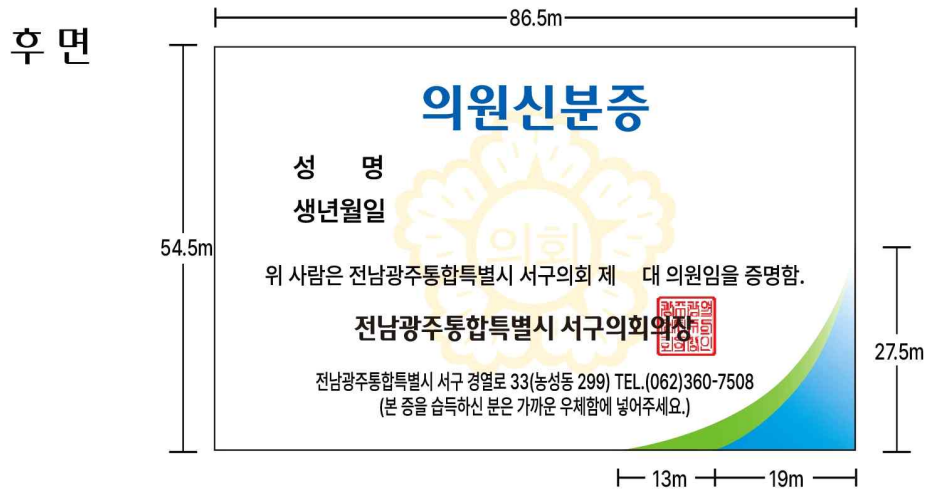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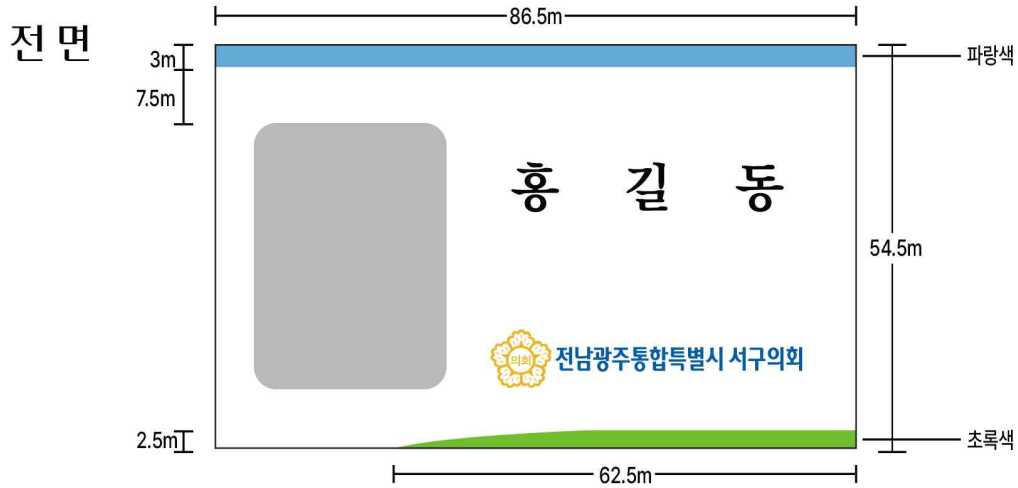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근거서류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표] <개정 2026. 7. 1.>제9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개정)관련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6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2. 글자의 규격 등

가. 글자의 크기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전 면			■ 후 면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이름(한글)	20 pt	KoPubWorld 바탕체_Pro	의원신분증	20 pt	빛고을광주_Bold	
의회명칭(한글)	10.5pt	빛고을광주_B old	성 명 등 명칭	9 pt	Pretendard SemiBold	
의회마크	0.8×0.8mm	생년월일		10 pt	KoPubWorld바 탕체_Pro	
		성명		11.5 pt	KoPubWorld바 탕체_Pro	
		위 사람은... 증명함.		9 pt	Pretendard Mediu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		13 pt	빛고을광주_Bold	
		직인		0.8×0.8mm		
		의회주소 등		7 pt	Pretendard Medium	

나.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를 기본으로 한다.

전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색상은 파랑색=C(100):M(60):Y(0):K(0)이다.

3.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5×86.5×0.8mm)

4.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가. 파랑색 = C(100):M(20):Y(0):K(0), 파랑색 그라데이션

나. 초록색 = C(60):M(0):Y(100):K(0), 초록색 그라데이션

5. 인쇄사양은 실크인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제12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b>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b>									
신청 인 기 재 란	① 소 속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 성명	한 글 한 자	⑥ 생년월일						
	⑧ 전화번호(주택)		⑦ 주 소	□□□-□□□					
소속 기 관 기 재 란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확인	인 사 주무관	(인)	연 금 주무관	(인)	감 사 주무관	(인)		(인)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p> <p>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소속기관의 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p> <p style="color: blue;">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p>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 · 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주무관 · 연금주무관 및 감사주무관이 직접 기재함(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제12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관련

##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제12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관련



##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22] <개정 2026. 7. 1.>제13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관련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8조제2호 관련)

1.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외 지역	교류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5점 (최대 1.20점)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내 지역	교류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2점 (최대 0.48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제13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관련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㉑	㉒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㉞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 1. 등록기간

0000 년 00 월 00 일부터  
00 일간  
0000 년 00 월 00 일까지

###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 3. 구비서류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군·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제14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관련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제 목		
<p>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p>          <p>20 . . . . .</p>          <p><b>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 (인)</b></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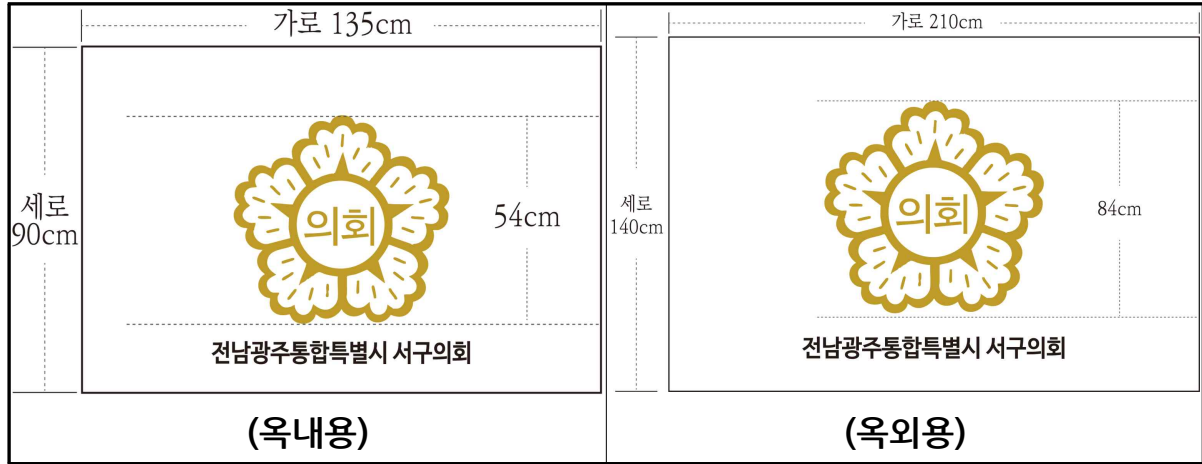
[별표 1] <개정 2026. 7. 1.>제17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관련

## 문장(제2조 관련)

 <p>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외형 : 무궁화 형상(금색)</li><li>2. 중앙 : “의회” 글씨(금색)</li><li>3. 원형 내 바탕 : 백색 또는 옅은 청색</li><li>4. 규격은 필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li><li>5. 글자형 : 서울남산체</li></ol>
---	--

[별표 2] <개정 2026. 7. 1.>제17조(「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관련

### 의회기(제3조 관련)



#### < 규 격 >

- 기면은 흰색으로 한다.
- 깃면의 크기 : (옥내)가로 135cm 세로 90cm / (옥외) 가로 210cm 세로 140cm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각 글자의 크기
  - 글자의 크기는 세로의 1/12, 글자 전체의 폭은 가로의 1/2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부착
  - ※ 다만, 필요에 따라 위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현 행	개 정 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p> <p>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③ (생략) ④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u>(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p> <p>제13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생략)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u></p> <p>제1조(목적) -- 규칙은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6조----- -----.</p> <p>제2조(적용 범위)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p> <p>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13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p>

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 국장에게 보  
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  
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  
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생략)

나.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적  
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  
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나. (생략)

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적  
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4.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  
-----  
-----.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3.·4. (현행과 같음)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전문) ①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전문에는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u>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u>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p> <p>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u>광주광역시 서구보</u>(이하 “구보” 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한다.</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p> <p>제2조(전문) ①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p> <p>②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u>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u>----- ----- -----.</p> <p>제3조(공포)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p>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하여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모든 규칙을 대상으로 한다.</p> <p>제3조(표기원칙) ①<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은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 ----- -----.</p> <p>제2조(적용대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p> <p>제3조(표기원칙) ①<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	-----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u> <u>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u> <u>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u> 」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u> 」 제4조----- ----- ----- .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u> <u>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u> <u>제한에 관한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u> <u>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u> <u>제한에 관한 규칙</u>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u>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현행	개정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u></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u>」----- ----- ----- -----.</p>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현행	개정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u></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p>

다.	
----	--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u> <u>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u> <u>관한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u> <u>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u> <u>관한 규칙</u>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p>	<p>제1조(목적) ----- -----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u> ----- ----- ----- -----.</p> <p>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 ----- ----- ----- ----- -----.</p> <p>1. -----</p>

<p>반 또는 징계 대상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p> <p>2. (생략)</p> <p><u>제5조 ~ 제11조</u> (생략)</p> <p><u>제12조</u>(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u>」 및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u>」을 준용한다.</p>	<p>----- <u>요구자</u>-----</p> <p>-----</p> <p>2. (현행과 같음)</p> <p><u>제4조 ~ 제10조</u> (현행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p> <p><u>제11조</u>(준용) -----</p> <p>-----</p> <p>-----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u>」 및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u>」-----</p> <p>-----.</p>
---	--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현행	개정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u>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u>(이하 “의</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u></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원</u>-----</p> <p>-----</p> <p>-----</p> <p>-----.</p> <p>제2조(적용범위)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원</u>-----</p>

<p>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u>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p>	<p>-----.</p> <p>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장</u>-----.</p>
---	---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

현 행	개 정 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u></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의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 통합특별시</u> ----- ----- -----.</p>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고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① ----- -----.</p> <p>1.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조(허가권자)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포함)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 1. ~ 4. (생략)
- ② ~ ⑤ (생략)

제3조(허가권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  
 ----- .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① -----  
 -----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현행	개정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생략)

② 근무상황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생략)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  
-----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서구의  
회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 여  
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  
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u>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 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 한 사항) -----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② (생략)

③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  
-----  
-----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  
-----  
-----  
-----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

따로 정할 수 있다.	-----.
-------------	--------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현           행	개   정   안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u>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u> 시 서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남광주 통합특별시</u> ----- ----- ----- -----.
제2조(정의) ① “진정서”란 진정인이 <u>광주광역시</u>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1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현행	개정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u></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u>광주광역시</u>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p>
<p>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p>
<p>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u></p>	<p>제17조(준용규정)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u>전</u></p>

레」와 「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u> 」을 준용한다.	<u>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현 행	개 정 안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u>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은 「 <u>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 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 제5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	④ -----

<p>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p>⑤·⑥ (현행과 같음)</p>
---	---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p><u>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주광역시서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u>의회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u>----- ----- ----- -----.</p>